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2018. 10. 23.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

1. 제 출 자: 성동구청장

2. 제안이유

토지개발 사업으로 일단의 토지가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불합리한 행정경계를 실제 생활권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 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행정구역 변경 대상지 (안 개정연혁표 6)

사업구역	변경 전	변경 후
왕십리뉴타운 1 7 역	상왕십리동 815번지 등 6필지	하왕십리동 1072번지 등 6필지
	홍익동 613번지	하왕십리동 1073번지
	하왕십리동 376번지 12 등 7필지	상왕십리동 817번지 1 등 7필지
행당도시개발지구	응봉동 1번지 1 등 32필지	행당동 381번지 1 등 32필지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: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의2제1호

「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」제9조의2

- 나. 예산조치: 별도 예산조치 필요 없음
- 다. 기 타
 - 1) 입법예고(2018. 8. 9. ~ 8. 29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 - 2) 규제심사 결과, 신설 또는 강화규제 없음
 - 3) 부패영향평가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 - 4)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 - 5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5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토지개발사업(왕십리뉴타운 1구역 및 행당도시 개발지구) 으로 일단의 토지가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코자 하는 것임
- 행정구역 변경 대상지는 총 46필지로, 왕십리뉴타운 제1구역에 포함된 상왕십리동 관할구역 중 815번지 등 6필지를 하왕십리동 1072번지 등 6필지로, 홍익동 관할구역 중 613번지를 하왕십리동 1073번지로, 하왕십리동376번지 12 등 7필지를 상왕십리동 817번지 1 등 7필지로 편입하고, 행당도시개발지구의 응봉동 관할 구역 중 1번지 1 등 32필지를 행당동 381번지 1 등 32필지로 편입코자 하는 것으로,
- 사업단지별 구획에 맞게 행정 경계를 조정함으로써 실제 생활권역과 행정권역의 일치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은 높이고, 재산관리, 공부 발급 등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도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타당한 안으로 여겨짐.